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○○○○○○장관)
제출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최근 일부 내수면(북한강·남한강)을 중심으로 인위적인 파도(1~2m)를 생성하여 활동하는 신종레저기구 웨이크서핑 증가에 따른 주변 계류 시설·선박 파손 등 인적·물적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운항기준을 마련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가. 운항제한 규정 신설(안 별표 7)

- 수상레저시설 및 선착장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구역에서 웨이크서핑보트를 운항할 수 없도록 함
- 다만 5노트 이하의 속력 및 특수한 장치를 사용하지 않아 인위적 파도를 생성하지 않을 경우 운항가능하도록 단서조항 추가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7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계류장 , 사업장 등 수상레저시설 및 선착장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구역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파도를 생성하는 특수한 장치를 설치하여 인위적으로 파도를 생성하는 기구(웨이크서핑보트 등)를 운항해서는 안 된다. 다만, 5노트 이하의 속력 및 특수한 장치 미사용 등 웨이크 서핑에 필요한 인위적 파도를 생성하지 않고 운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	
연 락 처	(032) 835 - 2351